

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5년 1월 20일

국 무 총 리 정 흥 원

국 무 위 원
고 용 노 동 부 장 이 기 권

●법률 제13047호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에게”를 “근로자 등에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근로자의”를 “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”로, “그 상한액을 제한할”을 “따로 정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

가. 「민사집행법」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

나. 「민사집행법」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

다. 「민사집행법」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, 청구의 인낙(認諾)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

라. 「민사조정법」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

마. 「민사조정법」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

바. 「소액사건심판법」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

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퇴직한 근로자”를 “근로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양도하거나”를 “양도 또는 압류하거나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체불 임금등의 확인)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「법률구조법」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

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「법률구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4조제4항 중 “제2항의”를 “제2항과 제3항의”로, “제2항에 따른 반환책임”을 “책임”으로 한다.
제19조제2호 중 “제7조제5항”을 “제7조제6항”으로 한다.
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

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(替當金)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용자를 할 수 있도록 용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,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용자 대상의 확대(제1조, 제7조의2제1항).

나.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대(제7조제1항제4호·제3항).

다.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서류(체불금품확인원)의 발급 근거 마련(제12조).

라.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 등을 한 자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(제14조제4항).

<법제처 제공>